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요 구

제 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기 관 명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광산구

내 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 등”이라한다)의 의무사용 건설공사<sup>1)</sup>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1)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2014.3.6. 기준)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1. 광주광역시(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 가. 전략산업본부 투자유치과

광주광역시 ○○○○과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광산 구에 위치한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를 추진하면서, 광주광역시 (24.6%)와 광주광역시○○○○(24.4%)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산단 개발(주)를 설립하였고, ○○○○산단개발(주)를 발주자로 하여 ‘○○○○ 일반산업 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였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순환골재는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1]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017.1.4	2020.1.3	반영	미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 광주광역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종합건설본부

광주광역시 ○○○○○○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복구에 위치한 ‘○○순환도로 개설공사(2공구)’와 광산구에 위치한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등 3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시계간 도로확장 공사(2공구)’ 건설공사의 순환골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를 위반하였다.

[표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도로개설공사(2공구)	2016.5.11	2017.12.24	반영	반영	제출	-	
2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2016.12.5	2019.12.4	반영	해당없음	제출	-	
3	○○○○~○○시계간 도로확장공사(2공구)	2014.7.21	2018.12.31	반영	미반영	제출	-	위반 (공사중)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 2. 광주광역시 서구(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 가. 서구 ○○○○국 ○○과

광주광역시 서구 ○○과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로 ○○○○번길 주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 11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순환골재는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로 ○○○○번길 주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 10개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중 9개의 건설공사는 준공을 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를 위반하였다.

[표3]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대로 ○○○○번길 주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2014.3.27	2014.4.15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	서구 ○○로○○○번길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2014.8.6	2014.8.25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3	○○동 ○○○○-○○번지 외 1개소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2015.4.17	2015.5.11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4	○동 ○○○-○번지 외 1개소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2015.10.5	2015.10.1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5	○○○동 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2016.1.11	2016.5.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6	○○○동 주민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2016.4.7	2016.8.4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7	○동주민센터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2016.4.18	2016.7.16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8	○○○동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6.11.9	2017.1.7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9	○○동 ○○호수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7.3.9	2017.6.6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0	○○○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7.8.4	2017.11.1	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11	○○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공사	2017.8.11	2018.2.11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 광주광역시 서구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서구 ○○○○국 ○○과

광주광역시 서구 ○○과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동 ○○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4]와 같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를 위반하였다.

[표4]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동 ○○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2016.01.04	2016.07.17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 광주광역시 서구 제출자료 재구성

## 다. 서구 ○○○○국 ○○○○과(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 업무 소홀)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의 통보와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광주광역시시장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환경생태국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서구 ○○○○과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을 미준수하고 사용계획서의 미제출 및 사용실적을 미보고한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이하 및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은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5]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

구분	대상(위반) 건설공사	설계 미반영(미사용)	사용계획서 미제출	사용실적 미보고	비고
○○○○국 ○○과	9(9) 2(2)	9 2	- -	- -	준공 준공 전
○○○○국 ○○과	1(1) 0(0)	1 0	- -	- -	준공 준공 전
계	10(10) 2(2)	10 2	- -	- -	준공 준공 전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광주광역시 복구(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 가. 복구 ○○○○국 ○○○○과

광주광역시 복구 ○○○○과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동 딸기집하장 주변 농로포장공사(2차)’ 등 6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를 위반하였다.

[표6]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동 딸기집하장 주변 농로포장공사(2차)	2016.7.11	2016.8.7	해당없음	미반영	-	-	위반 (준공)
2	○○동 ○○○번지 주변 농로포장공사	2016.7.14	2016.10.11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3	○○동 ○○○번지 주변 농로보수공사	2016.8.24	2016.9.2	해당없음	미반영	-	-	위반 (준공)
4	○○동 ○○○○번지 주변 농로포장공사	2016.11.25	2016.12.22	해당없음	미반영	-	-	위반 (준공)
5	○○동 ○○○번지 주변 농로포장공사	2016.12.2	2016.12.29	해당없음	미반영	-	-	위반 (준공)
6	○○동 ○○○번지 주변 농로포장공사	2017.3.6	2017.4.6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 광주광역시 복구 제출자료 재구성

#### 나. 복구 ○○○○국 ○○과

광주광역시 복구 건설과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망월동 중소기업연수원 주변 농로포장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7]과 같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를 위반하였다.

[표7]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동 ○○○○연수원 주변 농로포장공사	2016.10.17	2016.12.14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	○○지구 우수관거 정비공사	2016.6.15	2016.9.12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 광주광역시 복구 제출자료 재구성

#### 다. 복구 ○○○○국 ○○○○과(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 업무 소홀)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의 통보와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광주광역시시장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환경생태국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복구 ○○○○과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발주자에

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을 미준수하고 사용계획서의 미제출 및 사용실적을 미보고한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이하 및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8]과 같이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은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8] 광주광역시 북구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

구분	대상(위반) 건설공사	설계 미반영(미사용)	사용계획서 미제출	사용실적 미보고	비고
○○○○국 ○○○○과	<b>6(6)</b> 0(0)	<b>6</b> 0	- -	- -	<b>준공</b> 준공 전
○○○○국 ○○과	<b>2(2)</b> 0(0)	<b>2</b> 0	- -	- -	<b>준공</b> 준공 전
○○○○○○○ ○○○○○	<b>0(0)</b> 1(0)	<b>0</b> 0	- 0	- -	<b>준공</b> 준공 전
계	<b>8(8)</b> 1(0)	<b>8</b> 0	- 0	- -	<b>준공</b> 준공 전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 4. 광주광역시 광산구(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 가. 광산구 ○○○○국 ○○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동 ○○○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등 21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패 [표9]와 같이 ‘○○동 ○○○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등 16개의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를, ‘○○산단00번로 ○○○○ 앞 하수도정비공사’ 등 14개의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를 위반하였다.

[표9]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동 ○○○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2014.7.9	2015.12.24	미반영	해당없음	-	-	위반 (준공)
2	○○○○○○○○로 ○○○○ 앞 하수도 정비공사	2014.7.7	2014.12.03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3	○○동 ○○교 주변 하수도이설 및 펌프설치공사	2014.12.26	2015.08.22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4	○○동 농어촌공사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2013.12.12	2014.09.09	해당없음	해당없음	-	-	
5	○동 ○○동 하수도 정비공사	2014.6.14	2014.8.25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6	○○산단 ○○○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2013.11.13	2015.06.2	해당없음	해당없음	-	-	
7	○○동 ○○지구 하수도정비공사	2013.6.22	2015.7.20	해당없음	해당없음	-	-	
8	○○동 ○○병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015.12.04	2016.06.27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9	○○산단 ○○○○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2012.9.18	2017.6.6	해당없음	해당없음	-	-	
10	○○동 ○○○○-○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016.3.3	2016.6.1	미반영	해당없음	-	-	위반 (준공)

연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1	○○동 ○○병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2016.6.3	2016.11.17	해당없음	해당없음	-	-	
12	○○동 ○○○○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016.6.23	2016.9.20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3	○○동 ○○○-○○번지 일원 상습침수구역 배수로정비사업	2016.7.12	2016.11.2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4	○○동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2012.12.21	2014.7.2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5	○○동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2012.12.21	2015.8.21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6	○동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2012.12.21	2014.7.2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7	○○동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2012.12.21	2014.7.2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8	○○동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2012.12.21	2014.7.2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9	○동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2012.12.21	2014.7.25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0	○○동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2012.12.21	2014.08.2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1	○○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2014.3.10	2014.4.25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출자료 재구성

## 나. 광산구 ○○○○국 ○○○○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6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패 [표10]과 같이 ‘○○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설공사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를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으며, ‘○○○○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4개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또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한 ‘○○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고,

순환골재 등을 사용한 ‘○○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는 준공 전 제출하여야 하는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10]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4.6.30	2015.5.13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	○○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4.7.7	2015.9.23	미반영	반영	제출	미보고	위반 (준공)
3	○○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4.7.28	2014.10.25	반영	반영	미제출	미보고	위반 (준공)
4	○○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6.4.5	2016.6.24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5	○○산단 근로자 주차장 조성공사	2016.10.26	2017.8.22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6	○○○○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7.2.7	2017.6.2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출자료 재구성

다. 광산구 ○○○○국 ○○○○과(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 업무 소홀)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의 통보와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광주광역시시장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환경생태국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행정과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을 미준수하고 사용계획서의 미제출 및 사용실적을 미보고한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이하 및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11]과 같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무사용 등을 위반한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

구분	대상(위반) 건설공사	설계 미반영(미사용)	사용계획서 미제출	사용실적 미보고	비고
○○○○국 ○○과	<b>21(16)</b> 0(0)	<b>16</b> 0	- -	- -	<b>준공</b> 준공 전
○○○○국 ○○○○과	<b>6(6)</b> 0(0)	<b>5</b> 0	<b>1</b> -	<b>2</b> -	<b>준공</b> 준공 전
○○○○○○○	<b>0(0)</b> 2(1)	<b>0</b> 1	- 0	- -	<b>준공</b> 준공 전
○○○○과 (○○○○○○○○○주)	<b>0(0)</b> 1(1)	<b>0</b> 1	- 1	- -	<b>준공</b> 준공 전
계	<b>27(22)</b> 3(2)	<b>21</b> 2	<b>1</b> 1	<b>2</b> -	<b>준공</b> 준공 전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 서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은**

[시정] ① 건설공사가 준공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사업) 발주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하고,

②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사업)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사용계획서의 제출 및 사용실적 보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설공사를 추진하며,

③ 건설공사(사업) 발주부서와 환경관련 부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